

보도일시	2021. 11. 16.(화) 석간 *인터넷 2021. 11. 16.(화) 10:00 이후 / 총 7 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	과 장 오영민 서기관 임희중 사무관 강나래	044-202-7526 044-202-7527 044-202-7544
	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	과 장 임동희 서기관 박원아	044-202-7470 044-202-7446
	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	과 장 손필훈 서기관 강승헌	044-202-7682 044-202-8808
	고용노동부 규제법무담당관실	과 장 김부희 사무관 정혜진	044-202-7064 044-202-7068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- 근로자에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규정
-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절차 규정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
(5개 직종 추가, 기존 9종 → 14종)
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
따른 세부사항 규정(위원회 구성·운영, 지원계획 수립 등)
 -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

□ 정부는 11월 16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, 「남녀 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개정안 및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(시행일: '21.11.19.)

☞ 근로기준정책과 소관

- 「근로기준법」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,
 -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,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,
 - 서면 또는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.
- 이에 따라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에서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.

〈임금명세서 기재사항〉

- ▲ 성명, 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
- ▲ 임금지급일 ▲ 임금 총액
- ▲ 기본급, 수당, 상여금,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
(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)
- ▲ 출근일수·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(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포함)
- ▲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

- 그간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그 명세서를 교부하여 왔는데,
 - 이번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,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임금명세서 작성·교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 - * '정책자료 - 정책자료실'에서 설명자료 확인
- 이외에도 11월 19일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인상되고, 부속 기속사의 구조와 설비 기준 등이 바뀐다.

○ 우선,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위반행위별 상한액이 인상됐다.

- * △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: 500만원 이상 3,000만원 이하
- △ 부당휴직·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: 250만원 이상 1,500만원 이하
- △ 부당전직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: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
- △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: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

○ 또한 11월 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·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며,

- 이미 기숙사를 설치·운영 중인 사용자도 2022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꿔야 한다.

**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
(시행일: '21.11.19. 및 '22.5.19.)**

☞ 여성고용정책과 소관

□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.

○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.

- * ①신청서 기재사항: 육아휴직 대상 영유아의 성명·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
- ②긴급신청사유: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 (통상적인 경우는 30일 전까지 신청)
- ③휴직 종료사유: 육아휴직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

□ 또한, '22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됐는데,

○ 이 때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.

- * ① 배상명령 미이행 시 1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배상명령액, 그 외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1차 500만원, 2차 1천만원, 3차 2천만원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원, 2차 400만원, 3차 500만원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(시행일: '21.11.19.)

☞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

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범위 확대

□ 방문판매원,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업무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,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보호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*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, 해당 직종 종사자들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.

- * ①방문판매원, ②방문점검원, ③가전제품 수리원, ④화물차주(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, 시멘트 운송자, 철강재 운송자, 위험물질 운송자), ⑤소프트웨어기술자

○ 그 결과, 근로자 외에 특고 종사자 중 산안법이 적용되는 직종은 종전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된다.

② 도급인 조정의무 대상 규정

□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으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.

○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를 “화재·폭발, 끼임, 충돌, 추락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, 전도, 붕괴, 질식·중독” 총 8가지로 규정하여 구체화했다.

③ 발주자 안전보건대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안전보건전문가 규정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으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상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,
 - 산업안전지도사, 건설안전기술사 등 안전보건대상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*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.
- * ①산업안전지도사(건설안전 분야), ② 건설안전기술사, ③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, ④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

④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·위험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(300만원→500만원)됨에 따라,
 - 이에 맞추어 △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·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1차 1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이상 500만원으로,
 - △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·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·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·2차·3차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했다.
 - 또한, 근로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*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.
- * (기존) 1차 100만원, 2차 250만원, 3차이상 500만원 → (개정) 1차 300만원, 2차 600만원, 3차이상 1천만원

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(시행일: '21.11.19.)

☞ 근로기준정책과 소관

-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고, 보호·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.
 - 이에,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.
-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,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」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·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, 시행하게 된다.
 -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협의회, 전국적 규모의 노·사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,
 -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,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, 재난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등의 조치도 신설된다.
-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서기관(☎044-202-7527), 강나래 사무관(☎044-202-7544), 여성고용정책과 박원아 서기관(☎044-202-7446),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강승현 서기관(☎044-202-8808)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사무관(☎044-202-706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필수업무종사자법(21.11.19. 시행) 주요 내용

- ① (정의) 필수업무란,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,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(법 제2조)
 - 필수업무 종사자란, 필수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(근로자+특고+자영자 포함)
- ② (위원회) 고용노동부에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」를 설치,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, 지원계획 수립 등 심의(법 제6조)
 - * ▲ 구성: (위원장) 고용부 장관, (위원) ①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, ②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및 ③노·사단체 등 추천인사, ④전문가 등 15인 이내
 - ▲ 회의: 대규모 재난, 위원 1/3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, 협의·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
 - * ▲ 구성(안): (위원장) 고용부 고위공무원, (위원) ①중앙행정기관 공무원, ②광역·기초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및 ③노·사단체 등 추천 인사, ④전문가 등 30인 이내
 - ▲ 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③ (실태조사) 고용부 장관은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,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(법 제12조)
- ④ (지원계획 수립) 고용부 장관은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, 보호·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개선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(법 제11조)
 - 이와 별도로,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, 지역 재난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 가능(법 제9·10조)
 - * 지역위원회 설치,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의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함
- ⑤ (이행평가) 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고, 이를 정부 업무평가·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 요청 가능(법 제12·14조)

< 재난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·지원 절차 >

